

# 중앙설계심사위원회운영세칙(1983. 5. 12제정)

건설부훈령 제600호

설계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건설부장관◎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 중앙위원회(개별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회는 공사내용의 설명, 질의, 검토, 의견 발표, 토의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다만, 설계심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의 설명 및 질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심의의결) ①일반공사의 설계인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설계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설계심사위원회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합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합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 시행하거나 당해 중앙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

3. "설계재심의"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합사항이 중대하여 재설계를 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

②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또는 조건부 대안채택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채택"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합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

2. "조건부대안채택"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합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 시행하거나 당해 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

③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적격"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심사를 한 결과 당해 설계의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40점 이상인 설계를 말한다.

**제4조** (회의록 작성) 중앙위원회의 심의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의 구성) ①중앙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전문적인 학식과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공정하며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당해분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
2.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5. 정부기관의 당해분야에서 3급이상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자
6. 정부투자기관의 당해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임원

②위원의 구성은 이론과 실무간의 연계를 위하여 교육기관, 연구기관, 용역업 및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시공평가요령) 규칙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대형공사의 채점등) ①특례규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시설공사의 내용과 별표 설계배점기준을 고려하여 당해설계총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장은 그 배점표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공사의 내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배점기준의 배점범위를 초과하여 배점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위원(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가를 포함한다)은 위원지명시 지정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회의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별심의회의 의장은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 전체에 대하여 채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전문분야 전체에 대하여 채점하여 그 점수를 개별심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심의회의 의장은 이를 참고로 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4. 개별심의회의 의장과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산출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당해 설계도서의 설계점수로 한다.

5. 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 사사오입한다.

②설계점수를 통지할 때에는 입찰자별 설계도서의 채

첨된 첨수의 총합계만을 통지한다.

③ 배점표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에 첨부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할 때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심사사 그 전문가에게 당해 특수분야에 대하여 채점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각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의 지명은 2인이상으로 하고, 중앙위원회는 각 전문분야의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서식]

### 중앙설계심사위원회회의록

1. 건명:

2. 참석위원:

성명	서명

3. 회의내용: 별첨

의장: ①

198 년 월 일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회의내용

1. 건명:

2. 회의일시:

3. 회의장소:

4. 심의의결사항:

5. 회의진행사항:

0501-(3-1)비 190mm×268mm  
83. 6. 2통제 (신문용지 54g / m<sup>2</sup>)

[별지 제 2호서식]

### 평가요령서

공사명:

공사개요:

분야	첨검사항	조치사항	첨검내용
1. 설계심의지 적 사항 시 정여부	(1) 지적사항 시정 (2) 항목별 조치결과 타 당성		

2. 설계심의 효과	(1) 설계심의 내용이 실 지 시공에 효과를 본 경우		
3. 시공 기술 관리	(1) 기술도입 사례 (2) 시공방법 개선내용 (3) 시공상의 문제점		
4. 종합계획에 비치의 적정 성(건축공사 에 한함)	(1) 배치계획 (2) 동선계획		

(주) 1. 양식은 8별지를 사용한다.

2. 조치사항은 발주청에서 조치내용을 기술한다.

3. 첨검내용은 첨검반에서 현지 방문후 기술한다.

0502-(3-2)일

83. 6. 2통제

270mm×380mm

(신문용지 60g / m<sup>2</sup>)

-----  
[별지 제 3호서식]

### 채점표

전명:

전문분야:

구분	착안사항	채점
계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 7조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명에 대한 설계를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198 년 월 일

위원: ①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0503-(3-3)일  
83. 6. 2통제

190mm×268mm  
(신문용지 54g / m<sup>2</sup>)

[별표] 설계배점기준

가. 토목분야

전문분야	배점내용	배점	비고
1. 시설물 계획		40~60	
	가. 사전조사사항 나. 설계기준 다. 위치 및 배치계획		

	라. 시설물 규모 및 형식선정 마. 공법 및 기능성 바. 시공성 및 공정계획 아. 조경 및 환경계획 사. 구조물 조형미 자. 기타사항		
2. 구조계산	가. (주요) 구조물의 단면결정 및 구조적 안정성 나. (계약) 구조계산 내용 다. 기타사항	15~30	(주) 팔호는 기본 설계시 적용됨.
3. 주문 및 수리 계산	가. 주문 및 수리계획 나. (개략) 주문 및 수리계산 다. 기타사항	15~30	
4. 토질 및 기초	가. (개략) 토질조사 및 시험 나. 기초 구조의 선정 및 안정성 다. 기타사항	15~30	
5. 기계 설비	가. 기계 설비 계획 나. 유지 관리 다. 기타사항	5~20	
6. 전기 설비	가. 전력 설비 계획 나. 약전 및 소방 설비 다. 에너지 절감 라. 기타사항	5~20	

7. 건축	가. 건축 사항 나. 기타 사항	5~10	
계		100	

#### 전문분야

전문분야	구 분	배 점
1. 건축계획	(1) 단지계획 및 배치도 (2) 평면도 (3) 입면도 및 기타	28~32 7~11 14~21 7~10
2. 조경	(1) 조경계획 및 배식 평면도, 토공계획도 (2) 조경 시설물, 체육·유화 시설물계획도 및 기타	2~6 1~4 1~2
3. 건축구조	(1) 단면도 (2) 구조(설계도) 및 기타	12~18 4~6 8~12
4. 건축시공	(1) 공법 및 시공 (2) 각종 상세도 및 기타	10~14 4~6 6~8
5. 기계설비	(1) 위생계획 (2) 난방계획 (3) 유지 관리 (4) 냉방, 자동제어, 환기설비 및 기타	14~20 5~7 7~9 1~2 1~2
6. 전기설비	(1) 전력설비 (2) 약전 및 소방설비 (3) 에너지 절감 및 기타	9~16 6~11 2~3 1~2
7. 토목	(1) 상하수도계획 (2) 도로 및 포장계획 (3) 토공 및 기타	3~6 1~2 1~2 1~2
계		100

#### 공동주택관리규칙증개정령(1983. 6. 25개정)

건설부령제358호

공동주택관리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본문중 “영 제3조제1항제5호”를 “영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 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제 4조 제1호중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를 “공동주택 단지의 배치도 및 영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영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로 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도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서류 및 도서”로 하고, 동

조제 4 호중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을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 1 조의 도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 2 조의 서류 및 도서”로 한다.

제 6 조 제 6 항을 삭제한다.

제 7 조 본문중 “영 제10조제10항제 4 호”를 “영 제 10조 제 10 항제 5 호”로 한다.

제11조 제 2 항중 “통보를 받은 날까지”를 “통보를 받은 후 1월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 법 제38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은 영 제2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23조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은 별표 5 와 같다.

[별표 2]의 정기진단란중 해빙기진단란의 대상시설중“교량” 다음에 “· 우물비상저수시설”을 추가한다.

[별지 제 1 호서식]의 (이면) 구비서류란의 제 1 호중 “임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로 하고, 동 제 2 호중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로, “건축법시행규칙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로 하며, 동 제 4 호중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을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로, “건축법시행규칙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로 하고, 사무처리흐름도의 경유기

관란중 

경유기관
시장 또는 군수

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83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 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